

—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1년 2월 6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1년 2월 6일

라. 상정일자 : 2001년 2월 12일

제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조 훈 영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체육관과 시민운동장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신설되는 전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

다. 주요내용

- 제2조(체육시설의 범위 및 용어의 정의)
- 제3조(사용허가)
 - 신청에 의한 사용허가 및 변경
- 제4조(사용허가 우선순위)
 - 기념행사, 지방자치단체, 체육진흥행사, 학교행사, 동호인 순서
- 제6조(사용제한)
 -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저해, 시설물관리상 지장, 시장이 필요시

○ 제8조(사용료)

- 사용료는 전용사용, 사용, 증계방송, 상행위사용, 부속시설 사용 등으로 구분

○ 제9조(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)

- 입장 수입의 20%로 하되 정산토록 한다.

○ 제11조(사용료의 감면)

- 국가, 자치단체행사, 체육진흥, 불우청소년 등을 위한 각종행사, 등록된 경기·동호인 단체의 사용

○ 제15조(손해배상)

- 사용자 귀책사유로 시설물 손상시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

○ 제20조(위탁관리)

-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라. 참고사항

- 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
- 경주시 실내체육관사용조례
- 부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
- 마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경 도

- 구미체육관을 준공하여 관리 운영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되 기존 체육 시설과 앞으로 추가될 시설의 관리를 위한 조례안입니다.
- 제3조4항과 제8조1항은 제2조(정의) 4와 관련사항이므로 제3조(사용허가) 4항중 “사용료”를 “이용료”로, “사용권”을 ‘이용권’으로 제8조(사용료) 1항중 “사용”은 “이용사용”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제5조(시설의 개방)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장소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,

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6조(사용 제한)에 의한 사용제한 규정과 이중되므로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할 수 없다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

- 제5조(시설의 개방) 3항중 “제20조”는 “제16조”로 제9조1항중 “이 초대권의”는 “이경우 초대권의”로 제14조(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) 1항중 3은 제8조2항과 이중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